

제3056호
2024. 1. 10.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편집인 : 홍보담당관 유진영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자치법규

선	기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 [규 칙]
 - 제776호 : 서울특별시 중구 성과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2
 - [훈 령]
 - 제18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취업정보은행 설치·운영 규정 폐지훈령 9
 - 제185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음브즈맨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 11
- 고 시
 - 제2023-79호 :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13
 - 제2024-3호 :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15
 - 제2024-4호 :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17
- 공 고
 - 제2024-42호 :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고 19
 - 제2024-43호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고 20
 - 제2024-44호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고 21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중구 성과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76호

서울특별시 중구 성과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성과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의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란 구 본청의 소속기관과 직속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평가”란 업무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란 평가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종합평가”란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 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성과관리”라 함은 규정업무 추진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 ③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2장 평가의 대상 및 종류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업무 등으로써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 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의 대상) 평가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의 담당관, 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정기평가) ① 평가대상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1월 이내에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 ③ 구청장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다른 평가 주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내부평가단 운영)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종합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효과성, 능률성 및 목표달성 과정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④ 평가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기관평가) 구청장은 평가 대상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주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주민평가) ① 구청장은 업무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주민의 입장에서 평

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목표관리)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성격과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평가의 절차

제14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의 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 ② 평가대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해당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대상 기관의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제15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 ② 평가대상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평가대상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주요업무계획,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지침의 시달)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2월말까지 평가대상의 장에게 시달한다.

-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업무 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와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평가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 2. 평가 대상 부서
- 3. 평가의 대상 및 범위
- 4. 평가시기
- 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포함)
- 6. 평가결과와 활용계획 등

제18조(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제1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평가관련 자료, 서류 등의 제출 요청
-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 3. 평가관련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 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평가결과와 활용

제22조(평가결과와 심의) 구청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제27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25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평가결과와 공개) ① 구청장은 평가계획, 평가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7조(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해당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 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중구 국장급 이상 공무원
- 2. 평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의 내용이 경미 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3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관리 업무 주관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세부운영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개인 및 과제중심 평가에서 부서 주요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구정평가 체계로 전환하여 목표와 실적관리 기반으로 업무 추진실적의 정기적 점검 관리 및 격려포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평가의 원칙 등 (안 제1조~제4조)
- 평가의 대상업무, 평가의 종류, 내부평가단 (안 제5조~제13조)
- 평가의 절차, 자료의 요청, 전자관리시스템, 평가관련 조사의 위탁(안 제14조~제21조)
- 평가결과에 따른 시장명령,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안 제22조~제26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27조~제36조)
 - 위원회 명칭 변경 : 성과관리위원회 → 업무평가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취업정보은행 설치·운영 규정 폐지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2024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훈령 제184호

서울특별시 중구 취업정보은행 설치·운영 규정 폐지훈령

서울특별시 중구 취업정보은행 설치·운영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유 및 주요내용

1. 이유

- 1998년 제정된 이후 2009년 일자리플러스센터 개관,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창출 기본 조례」의 제정 (2023.7.25.)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불필요해진 「서울특별시 중구 취업정보은행 설치·운영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취업정보은행 설치·운영 규정」을 폐지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옴브즈맨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2024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훈령 제185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옴브즈맨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옴브즈맨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유 및 주요내용

1. 이유

-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2023.12.27.)에 따라 유사기능 중복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옴브즈맨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옴브즈맨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79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우리 구 관할 구역 안의 아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지정취지: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주민을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우리 구 주민과 통행하는 모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금연구역 명칭: 서울신당초등학교 및 성동고등학교 통학로
-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 141 (신당동)
- 지정 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거리 제40호
- 지정 장소 및 범위: 아래 그림(녹색선으로 표시), 연장길이 612m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자: 2023년 12월 31일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홍보 및 계도기간: 2023. 12. 8. ~ 2024. 2. 29.
- 과태료 부과일(개시일): 2024. 3. 1.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10만원

5. 고시방법: 구청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

6.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보건지소과 금연사업 담당(☎02-3396-5673)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3호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37호(2020.11.0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내 공동개발을 지정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I. 변경결정사유

○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중 공동개발 지정을 결정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변경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변경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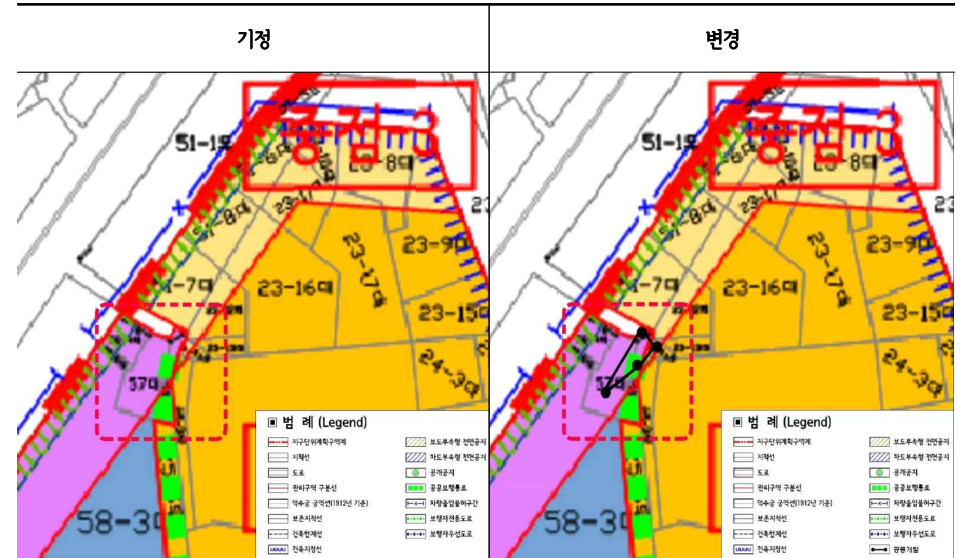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 변경 결정조서

구분	가구 번호	위치		면적(㎡)		비고
		동명	지번	필지	가구	
기정	이면부	-	충정로1가	57	66.1	-
			충정로1가	51-10	3.3	-
			정동	23-23	9.7	-
			정동	25-4	26.4	-
변경	이면부	-	충정로1가	57	66.1	공동개발 (105.50㎡)
			충정로1가	51-10	3.3	
			정동	23-23	9.7	
			정동	25-4	26.4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변경 결정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공동개발	○ 과소필지, 맹지, 부정형 필지 등 최대개발규모 범위 내에서 공동개발 지정

III. 지형도면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IV. 기타사항

기타 고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관리국 도심정비과 (담당자:강일용주무관, 02-3396-57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4호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37호(2020.11.0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내 건축지정선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I. 변경결정사유

-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 계획 중 건축지정선을 해제하고자 결정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②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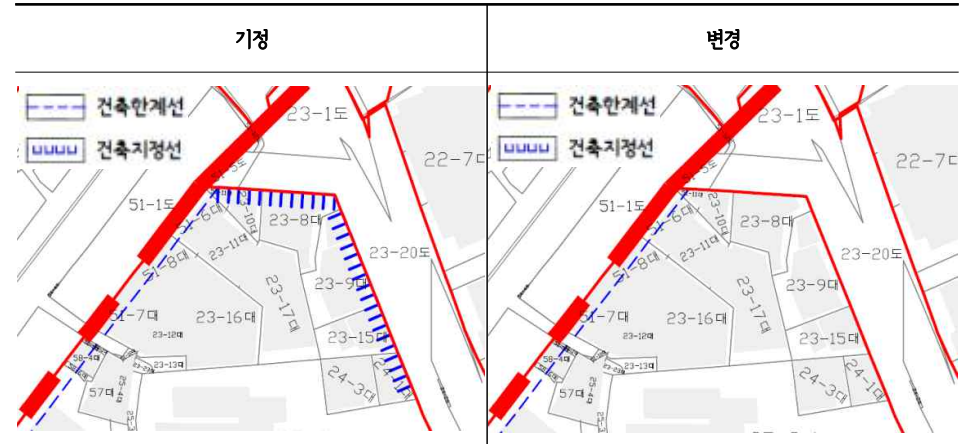
- 건축물에 관한 변경 결정조서
-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변경
 - 가)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변경
 - 건축선 지정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위치 및 폭은 결정도 참조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7조)
	이면도로 일부구간	- 도시계획도로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3m 후퇴	
건축지정선	중점관리구역 (소규모상가균형성지역)	- 질서정연한 가로분위기 형성을 위해 주요가로의 소규모필지 일부구간에 한해 전면도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하 후퇴	위치 및 폭은 결정도 참조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8조)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변경 결정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건축지정선	○ 지구단위계획의 건축지정선과 건축법의 건축선 상충에 따른 건축지정선 해제 (총정로1가 51-11, 정동 23-10 / 23-8 / 23-9 / 23-15 / 24-1)

III. 지형도면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IV. 기타사항

기타 고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관리국 도심정비과 (담당자:강일용주무관, 02-3396-57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2호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등록표상 18세 이상 주민 총수, 외국인등록표상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기준일 2023. 12. 31.)

구 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총 수	111,762명
주 민 수	110,846명
외국인 수	916명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3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고

「주민투표법」 제5조와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등록표상 18세 이상 주민 총수,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등록표상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18세 이상 외국인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기준일 2023. 12. 31.)

구 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총 수	111,946명
주 민 수	110,846명
외국인 수	1,100명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4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역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등록표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 외국인등록표상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된 19세 이상 외국인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기준일 : 2023.12.31., 단위 : 명)

구 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중 구 청 장	111,184	16,678
동명 소 공 동	1,921	289
회 현 동	4,199	630
명 동	2,484	373
필 동	3,728	560
장 총 동	4,254	639
광 희 동	5,573	836
을 지 로 동	2,850	428
신 당 동	7,133	1,070
다 산 동	12,324	1,112
약 수 동	14,530	1,112
청 구 동	11,726	1,112
신당 제5동	9,307	1,112
동 화 동	8,736	1,112
황 학 동	11,800	1,112
중 림 동	10,619	1,112

▣ 중구의회 지역구의원

(기준일 : 2023.12.31., 단위 : 명)

구 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중구 가선거구	30,580	6,116
동명 소 공 동	1,921	306
명 동	2,484	306
광 희 동	5,573	306
을 지 로 동	2,850	306
신 당 동	7,133	306
중 림 동	10,619	306
중구 나선거구	29,843	5,969
동명 신 당 제 5 동	9,307	299
동 화 동	8,736	299
황 학 동	11,800	299
중구 다선거구	24,505	4,901
동명 회 현 동	4,199	246
필 동	3,728	246
장 총 동	4,254	246
다 산 동	12,324	246
중구 라선거구	26,256	5,252
동명 약 수 동	14,530	263
청 구 동	11,726	263